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2026. 9.28.(월)]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8.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8. 24.

전홍표・감규상・권순재・김원일・류성국
문순규・박연정・박현재・배명갑・백승규
변보미・서명일・이우완・장병운・지상록
진형익・차중현・홍용채 의원(18명)

나. 회 부 일 자: 2026. 8.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9.28.)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전홍표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가 보호시설 또는 긴급피난처 등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입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피해자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및 진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반려동물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4조의2)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현행 조례

○ 입법예고(2026. 8. 24.~ 8. 31.) 결과: 의견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은정)

□ 개정목적

○ 본 개정 조례안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으로 피해자가 보호시설 또는 긴급피난처 등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보호 문제로 입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피해자 반려동물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24조의2(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는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사항 및 임시보호 기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가 보호시설 또는 긴급피난처 등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입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

하고자 동물보호센터에서 피해자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및 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은 단순한 반려동물 지원정책이 아닌 반려동물 보호자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보호자 부재로 인한 반려동물의 방치, 관리소홀 등을 예방할 수 있어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취지에도 부합함

○ 또한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 임시보호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정한 것은 보호의 필요성과 장기 보호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상황에 따라 임시보호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 기간을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하고 반려동물의 신속한 반환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반려동물의 방치 예방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보호 기간 만료 후 미인도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분양·기증) 기준을 운영 지침에 상세히 마련하는 등 보완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는 별도 예산 확보없이 기존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 내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기존 유기동물 보호 업무에 피해자 반려동물 임시보호라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추가되는 만큼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원 수요 급증 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대체토론)요지(주요문제점):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